■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4호서식] <개정 2021. 7. 23.>

[ ]샘물 개발 [ ]임시 허가 신청서
[ ]염지하수 [ ]임시 허가 변경신고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일자	처리기간 임시 허가 : 20일 변경신고 : 7일

신청인	성명(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)	생년월일
	주소(법인은 주된 사무실소재지)	전화번호

개발내용	위치	면적(㎡)
	개발공수(개)	개발기간
개발설비 명세	호정별	깊이(m)
	관재질 및 직경(㎜)	취수계획량(㎥/일)
양수설비 명세	호정별	동력(마력)
	토출관(吐出管)직경(㎜)	양수능력(㎥/일)

변경사항	변경 전	변경 후

「먹는물관리법」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시 허가를 신청 [ ]합니다.

변경신고 [ ]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시 · 도지사 귀하

첨부서류	1. 임시 허가 신청의 경우 가. 사업계획서 1부 나.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1부 다. 원상복구계획서 1부 라.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·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. 임시 허가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	수수료 없음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	→	접수	→	검토	→	현지확인 (임시 허가 신청만 해당함)	→	결재	→	임시 허가증 발급
신청인		시 · 도		시 · 도		시 · 도		시 · 도		시 · 도

210㎜×297㎜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